

문서번호	서울장학재단-275
보존기간	10년
결재일자	2016.5.12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제 호

담 당	부 장	사무국장	이사장
김동규	최준근	대결 최준근	문미란
협조자			

I·SEOUL·U



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기본계획

2016. 5.

서 울 장 학 재 단

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기본계획

I 목적

- ◆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왜곡된 성 인식 및 직장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

II 기본 방향

- ◆ 올바른 성윤리 의식 확립으로 건전한 직장 내 성문화 정착
- ◆ 성희롱·성폭력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
- ◆ 성희롱 사건 내부 신고 시스템 강화(고충상담원 신설 및 직무교육)
- ◆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

III 추진근거

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, 동법 시행령 제19조(성희롱 예방교육) 및 제20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
- 성희롱 방지조치 : 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의2, 시행령 제27조의2

IV 추진 계획

□ 성희롱 예방지침

- 성희롱 예방지침 근거
 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
- 성희롱 예방 지침 내규 마련
 - 2016년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(여성가족부) 및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
 - 성희롱 예방 역할과 성희롱 사건 매뉴얼 개선
 - 사건처리 시스템 및 세부절차 구체화
 - 행위자 무관용 인사 및 징계조치 원칙 확립
- 실시 계획
 - '16년 상반기 중 재단 성희롱 예방지침 내규 마련 예정

□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

- 2016년 재단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

소 속	직 급	성 명	성 별
서울장학재단	4급	이수현	여

- 재단 내 고충상담원 지정으로 성희롱 예방 및 고충사건 발생 시 대응 철저
- 성희롱 고충 상담원 전문 직무교육 실시
 - 교육대상 : 이수현(4급)
 - 교육기관 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전문교육기관
 - 교육방법 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집합교육

□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

○ 교육대상

- 이사장 포함 전직원 : 총 7명

○ 분야별 세부 실시 계획

- 교육방법

-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,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
- 외부 전문 강사 초빙교육 실시(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 섭외)

- 교육 횟수 및 시간 : 2회 이상 의무교육 실시, 총 4시간 이상

구분		교육 시간
교육 횟수 (2회 이상)	내부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통합교육)	2시간 이상
	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통합교육)	2시간

- 교육내용

구분	교육내용
성희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-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-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-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- 그 외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성매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-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-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
성폭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-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-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-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-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
가정폭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-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-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

-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
 - 추진대상 : 서울시 전 직원
 - 설문방법 : 연간 교육 실시 후 설문지 배포 및 수거(익명)
 - 결과활용 : 추후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및 교육에 반영

V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

□ 소요예산 : 459,000원

- 강사료 : 250,000원×1시간+120,000원×1시간(초과시간),(일반1급)
 - ※ 강사섭외자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에 변경될 수 있음
- 고충상담원 직무교육 : 89,000원(한국양성평등진흥원 집합교육)
 - 예산과목 : 경상운영비-사무관리비-일반운영비-교육훈련비

VI 향후 추진 사항

- 성희롱 예방지침 내규 제정 및 시행(6월 초)
-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교육 실시(6월 중순)
- 하반기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외부강사 교육(10월)
-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결과 제출(11월~12월)
-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교육 결과 보고(예방통합관리시스템 등록 _shp.mogef.go.kr),('17년 2월)

- 붙임 1.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1부.
2. 성희롱 고충 신청서 및 상담일지 1부.
3.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지 1부.
4.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표 1부. 끝.

[붙임 2] 성희롱 고충 신고서 및 상담일지

성희롱 고충 신청서

접수일	20 . . .		담당자	(서명)	
당사자	신청인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대리인 <small>※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</small>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행위자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상담(신청) 내 용	※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등을 기록합니다.				
요구사항 <small>※조사를 원하는 경우</small>					
처리결과					
※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.					

고충상담일지

상 담 일 지				
상담일	20 . . .	사례번호		
내담자		회기	회	상담자
상담방법	① 방문 ② 전화 ③ 인터넷 ④ 기타			
상 담 내 용				
차기 상담일시 : 월 일 (요일) 시				

[붙임 3]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지

성희롱 · 성폭력 · 성매매 · 가정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지

소속 : 서울장학재단

내용	매우 그렇다	대체로 그렇다	보통 이다	대체로 그렇지 않다	매우 그렇지 않다
이번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 예방교육자료에 만족한다.	⑤	④	③	②	①
동 교육을 통해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.	⑤	④	③	②	①
동 교육을 통해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 예방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임을 인식하였다.	⑤	④	③	②	①
동 교육이 업무 및 공무원 복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.	⑤	④	③	②	①
동 교육은 지속적으로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.	⑤	④	③	②	①
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 예방연수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 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내용 및 개선사항이 있는지 적어주세요.					
기타 건의 사항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					

일반사항

1. 연령대 선택 (① 20세~29세 ② 30세~39세 ③ 40세~49세 ④ 50세~59세 ⑤ 60대 이상)
2. 직위 선택 (①일반직 ② 기능직 ③ 기타)
3. 직급 선택 (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이상)

[붙임 4]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표

2016년 「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」

※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여부 본점 점수 반영

※ 기관분류 : A유형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직유관단체)/ B유형(초·중·고교)/ C유형(대학)

※ 『201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서』원본 : 예방교육통합관리(<http://shp.mogef.go.kr/>)에서 다운로드

유형	평가항목		2016년	
			배점	세부내용
계획 수립 (10)	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(10)		10	기본계획 미수립 (0) 기본계획 수립 (5) 예산반영 (+2) 기관장 결재 (+3)
교육 실시 (70)	교육참여(33)	기관장 참석	A, C : 5 B : 8	미이수 (0) 이수 (5, 8) *(B유형 및 고위직이 없는 경우 8점)
		고위직 참석 (B유형 제외)	A, C : 3	50~70% 미만 (1) 70~90% 미만 (2) 90% 이상 (3)
		직원이수율	25	50% 미만 부진기관*(A유형에 한해 적용) 50~60% 미만 (15) 60~70% 미만 (18) 70~80% 미만 (20) 80~90% 미만 (23) 90% 이상 (25)
		교육방법(30)	30	① (집합)내부직원강의 (10) ② 시청각교육(집합) (10) ① 사이버교육(이수확인가능) (15) ② 내부직원(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자) 강의 (15) (집합)일반강사 교육 (20) (집합)전문강사 교육 (30)
		교육횟수(5)	5	1회 (3) 2회 (4) 3회 이상 (5)
		만족도조사(2)	2	실시 (2)
	방지 조치 (20)	성희롱 예방지침 마련(5)	5	미수립 (0) 수립 (3)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5호 모두 반영 (+2)
		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(5)	5	고충상담 창구 설치 (2) 고충상담원 지정(+1) 고충상담원 남녀 각1인 이상 (+2)
		고충상담원 전문교육(5)	5	전원 미이수 (0) 고충상담원 중 50% 이하 이수 (2) 고충상담원 중 50% 초과 이수 (3) 금년내 1인 이상 이수 (+2)
		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5)	5	구성 (2) 외부전문가 위촉 시 (+1) 징계위원회에 고충심의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참여 (+2)
가·감점 (10)		① 신규자 교육 ② 비정규직 교육	4 (각 2점)	50% 미만(0) 50~70% 미만 (1) 70% 이상 (2)
	추천 교육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재 제작	2	사용 (2)	
	교육홍보자료제작	2	자체제작 (2)	
	소속·산하기관점검(B유형 제외)	2	점검 실시 (2)	
	우수사례 제출	2	제출 (2) *(소속·산하기관이 없는 경우 4점)	
	감점	-2점	2월말이후 제출	
합계				100점(가감점 110점)*